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846
----------	------

제출연월일 : 2024. 2. .

제출자 : 하남시장

1. 위탁사무명 :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책무 등)
- 「하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책무)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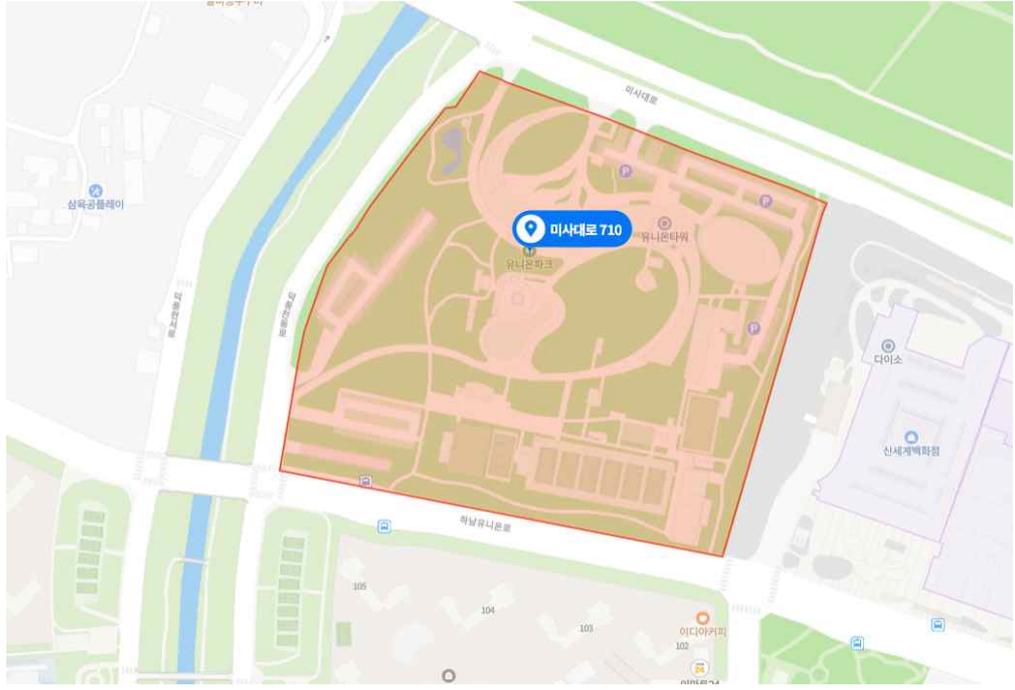
-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기간이 2024. 6. 30.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 환경교육 체계성과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하남시환경교육센터 효율적인 관리·운영

3. 위탁사무 내용

○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 학교,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위탁시설 개요

위 치	하남 유니온타워[하남시 미사대로 710(신장동)] 내
규모 및 지원시설	교육장 및 실습장(254㎡), 시청각실(166㎡), 사무실(22㎡)
운영인력	센터장 1명, 운영 인력 2명
위 치 도	

5. 민간위탁기간 : 2024. 7. 1. ~ 2026. 12. 31.(2년 6개월)

6. 수탁자 선정방식

- 위탁사무를 시행할 수탁기관(비영리법인·단체 등) 선정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공고시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등 시홈페이지 공개
- 신청자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무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위탁기간 소요 예산 : 375,000천원(150,000천원/년×2.5년)

○ 연간 소요 예산

비 목	세 목	금액	산출근거	비고
합 계		150,000,000원		
인건비	급여 (3인)	96,000,000원	3,000,000원*1인*12개월 2,500,000원*2인*12개월	센터운영 인건비
	기타 인건비 (프로그램 강사비)	20,000,000원	120,000원*100회 80,000원*100회	교육강사 인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20,000,000원	20,000,000원*1식	재료비 프로그램 개발
	공공요금	2,000,000원	2,000,000원*1식	
	복리후생비 (4대보험, 퇴직적립금)	12,000,000원	12,000,000원*1식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하남시 환경교육위원회 자문결과 : 민간위탁 적정

- 자문근거 : 「하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자문결과 : 하남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사업은 환경분야 전반에 관한 교육으로 하남시에서 직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는 방식보다 민간위탁을 통해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의 협업으로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관계를 구성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며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민간위탁 적정

9. 성과평가 결과 : 붙임1

- 2022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 평가지표를 활용한 성과 평가결과 100점 중 96점
- 2023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 평가지표를 활용한 성과 평가결과 100점 중 88점

10. 향후 추진계획

-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공개 모집 : 2024. 3월 중
-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2. 4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4. 6월 중

11. 관련 조례 : 붙임 2

붙임 1

성과평가 결과(2022년)

- 평가자 : 환경교육위원회 6명
- 평가방법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 평가지표에 따른 서면평가
- 평가결과 : 평균 96점

구분	평가지표	배점
계		100
1. 사업계획 (20)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10
	2.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10
2. 운영·관리 (40)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15
	3.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10
3. 성과·환류 (40)	1. 연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었는가?	25
	2. 사업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환류하였는가?	15

평가 지표	측정방법	답변 배점					평가 점수
		예	상당히	보통	아정도	아니오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설정했는지 여부 확인	예	상당히	보통	아정도	아니오	10
		10~9	8~7	6~5	4~3	2~0	
1-2	해당 사업의 내용 또는 구조, 추진방식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세부사업별로 모두 검토)	예	상당히	보통	아정도	아니오	10
		10~9	8~7	6~5	4~3	2~0	
2-1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예	상당히	보통	아정도	아니오	14
		15~13	12~10	9~7	6~4	3~0	
2-2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응하고 적절히 해결하였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예	상당히	보통	아정도	아니오	15
		15~13	12~10	9~7	6~4	3~0	
2-3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정도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예	상당히	보통	아정도	아니오	8
		10~9	8~7	6~5	4~3	2~0	
3-1	당초 계획된 사업의 달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예	상당히	보통	아정도	아니오	24
		25~21	20~16	15~11	10~6	5~0	
3-2	사업평가결과 또는 외부 지적사항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예	상당히	보통	아정도	아니오	15
		15~13	12~10	9~7	6~4	3~0	

붙임 1

성과평가 결과(2023년)

- 평가자 : 환경교육위원회 6명
- 평가방법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 평가지표에 따른 서면평가
- 평가결과 : 평균 88점

구분	평가지표	배점
계		100
1. 사업계획 (20)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10
	2.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10
2. 운영·관리 (40)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15
	3.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10
3. 성과·환류 (40)	1. 연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었는가?	25
	2. 사업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환류하였는가?	15

평가 지표	측정방법	답변 배점					평가 점수
		예	상당히	보통	아정도	아니오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설정했는지 여부 확인	예	상당히	보통	아정도	아니오	10
		10~9	8~7	6~5	4~3	2~0	
1-2	해당 사업의 내용 또는 구조, 추진방식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세부사업별로 모두 검토)	예	상당히	보통	아정도	아니오	9
		10~9	8~7	6~5	4~3	2~0	
2-1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예	상당히	보통	아정도	아니오	11
		15~13	12~10	9~7	6~4	3~0	
2-2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응하고 적절히 해결하였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예	상당히	보통	아정도	아니오	13
		15~13	12~10	9~7	6~4	3~0	
2-3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정도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예	상당히	보통	아정도	아니오	9
		10~9	8~7	6~5	4~3	2~0	
3-1	당초 계획된 사업의 달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예	상당히	보통	아정도	아니오	23
		25~21	20~16	15~11	10~6	5~0	
3-2	사업평가결과 또는 외부 지적사항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예	상당히	보통	아정도	아니오	13
		15~13	12~10	9~7	6~4	3~0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책무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하남시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책무)

-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장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다)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환경교육을 위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교육이 지역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지정)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남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학교,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 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